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4
----------	------

제출년월일 : 2008 . 9 .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종전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법명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근거법령의 법명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 나.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가능 사업 명시(안 제18조).
- 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안 제29조).
- 라. 위원회 기능 항목별 구분(안 제30조)
- 마. 위원회 구성 인원 명확화(안 제31조)
- 바. 법령의 위임없이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5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소비자기본법 제6조, 제8조, 제32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8. 8. 18. - 2008. 9. 6.(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하며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보호 내지”를 “보호하고”로 한다.

제8조 중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2.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에 대한 교육·계몽·캠페인
4.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및 정보의 제공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여 시장에게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 통신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권고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사안 중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구제 처리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시장은”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제28조 중 “사업자에게”를 “사업자의”로 한다.

장 구분 중 “제6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제6장 소비자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9조 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시장이 정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수수료의 심의 조정 다만, 소비자의 부담을 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소비자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
4. 소비자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소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3인,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단체에서 각 5인 이내, 학계, 법조계, 언론계, 공공단체, 노동자 단체 등의 구성원으로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7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경제정책과장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경제정책과장 최종재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역경제담당 김기서
	담당자 성명·전화	최명희 (행정 282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u>안산시(이하 “시”라 한다)</u>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소비자기본법</u>」</p> <p>..... 시</p> <p>.....</p> <p>.....</p> <p>.....</p> <p>.....</p>
<p>제2조(정의) (생략)</p> <p>1. ~ 2. (생략)</p> <p>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u>보호</u> <u>내지</u>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보호하고</u>.....</p> <p>.....</p>
<p>제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동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u>물가안정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 조절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p> <p>.....</p> <p>.....</p> <p>.....</p> <p>..... 「<u>물가안정에 관한 법률</u>」</p> <p>.....</p> <p>.....</p> <p>.....</p>
<p>제11조(위해물품의 제공금지) 사업자는 「<u>소비자보호법</u>」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닌된다.</p>	<p><삭 제></p>
<p>제12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분·가격·용도·사용방법·제조년월일·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 계량 행위를 하거나 불량계량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계량의 적정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삭 제>
<p>제15조(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삭 제>
<p>제16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소비자보호법」 제9조제1항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닌된다.</p>	<삭 제>
<p>제17조(소비자단체의 임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전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소비자에 대한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및 정보의 제공 <p>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p>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u>제18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8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u> <u>2.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u> <u>3. 소비자에 대한 교육·계몽·캠페인</u> <u>4.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및 정보의 제공</u>
<p><u>제20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u></p> <p><u>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 통신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u></p>	<p><u>제20조(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여 시장에게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 통신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권고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p><u><삭제></u></p>
<p><u>제23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접수된 사안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중지하여야 한다.</u></p>	<p><u>제23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사안 중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구제 처리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공무원 2인,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단체에서 각 5인,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공공단체, 노동자 단체등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p> <p>④ ~ ⑥ (생략)</p>	<p>제31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공무원 3인,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에서 각 5인 이내, 학계, 법조계, 언론계, 공공단체, 노동자 단체 등의 구성원으로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7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34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4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p>	<p><삭 제></p>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44
----------	------

제안년월일 : 2008. 9. 22.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소비자기본법에 등록소비자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용어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을 신설하고자 이를 수정함.

2. 주 요 골자

-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18조제2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등록소비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2.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소비자에 대한 교육·계몽·캠페인
 4.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및 정보의 제공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안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18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시장은 「소비자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p> <p>2.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p> <p>3. 소비자에 대한 교육·계몽·캠페인</p> <p>4.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및 정보의 제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18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시장은 「소비자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등록소비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p> <p>2.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p> <p>3. 소비자에 대한 교육·계몽·캠페인</p> <p>4.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및 정보의 제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안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p>